

000가 잔여지 및 잔여건물에 대한 수용을 반대하면서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매수해달라는 재결 신청에 대하여는,

잔여지 및 잔여건물은 사업인정구역(수용범위)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수용은 불가하므로 각하하기로 의결함